

「철도안전법」 제5조에 따라 제4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31일
국토교통부 장관

제4차 철도안전 종합계획(2024~2028) 고시

□ 법적 근거 : 「철도안전법」 제5조 및 제6조

-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(법정계획)

□ 계획의 성격 : 철도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종합계획

- 철도안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
- 광역·기초단체, 철도운영자 등의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

□ 계획수립 경위

- 제4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('21.12~'23.1)
-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제컨설팅 수행(BCG 수행, '23.3~12) 및 정책화(철도 안전정책 혁신방안, '24.7)

⇒ 철도안전의 구조적 개선 및 최근 사고대책을 포함하여 종합계획 수립

□ 계획의 주요내용 :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실천방향 제시

-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
-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,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
-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
-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철도안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
-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
-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-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- 철도안전 홍보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☐ 계획의 범위

- 시간적 범위 : 2024년 ~ 2028년(5개년)
- 공간적 범위 : 전국

☐ 기타 사항

- 제4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뉴스·소식의 공지사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(044-201-4602, 044-201-460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